

# 청원경찰운영규정

제정 2017. 5. 31. 규정 제22호  
개정 2017.10. 26. 규정 제93호

##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주요시설의 방호에 필요한 청원경찰의 정원, 임무 및 합리적인 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규정이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철 주요시설(이하 "주요시설"이라 한다)"이란 지하철 시설물 중 서울교통공사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지하철의 주요시설물을 말한다.
2. "청원경찰(이하 "청경"이라 한다)"이란 「청원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서울교통공사가 임용한 자를 말한다.
3. "청경대장, 청경반장, 청경조장(이하 "대장", "반장", "조장"이라 한다)"이란 「청원경찰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두는 감독자를 말한다.

## 제 2 장 정원 및 운영

제 3 조(정원) ① 청경의 정원은 「직제규정」 제10조(정원)에 의한다. 다만 정원에 도달할 때까지 별표 1과 같이 잠정 운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각 소속별 청경의 정원은 해당 시설의 실정에 따라 비상계획담당부서장이 조정·운영할 수 있다.

제 4 조(지휘통제) ① 본사에 배치된 청경은 비상계획담당부서장이 지휘·통제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청경은 배치된 각 시설의 장이 지휘·통제한다.

제 5 조(감독자의 임면) ① 청경의 감독자 및 그 수는 규칙 제19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장, 반장 및 조장의 수는 필요에 따라 사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② 청경의 감독자는 담당부서의 장의 추천을 받아 사장이 임면한다.

③ 청경의 감독자로서의 능력과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기타 질병 등으로 인

- 1 -

하여 업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담당부서의 장은 감독자의 직을 면하게 할 수 있다.

제 6 조(감독자의 임무) ① 청경대장은 비상계획담당부서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경에 대한 행정업무 수행
  2. 필요시 청경에 대한 교육 및 근무감독
  3. 청경의 고유업무에 속하는 사항과 기타 지시된 업무
- ② 청경반장 및 조장은 배치된 각 시설의 장 및 상급지휘자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경에 대한 근무편성, 근무위치 적정 및 지휘감독
  2. 청경의 교육훈련 실시 및 지시사항 전달
  3. 청경의 고충상담 및 근무상황 파악, 상급지휘자 또는 시설의 장에게 건의 및 보고
  4. 청경의 업무수행에 따른 제반 장표류 기록 정리
  5. 청경의 고유 업무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상급지휘자 및 시설의 장으로부터 지시, 위임받은 사항
- ③ 청경의 감독자는 소관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순선수범하여야 한다.

## 제 3 장 임용 및 복무

제 7 조(채용) ① 청경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인사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② 영 제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는 청경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 8 조(청경의 배치) 청경은 종합관제소 및 별관 등 주요시설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9 조(근무형태) ① 청경의 근무요령은 규칙 제14조에 의한다.

② 청경의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다. 다만, 비상사태나 유사시 또는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형태를 조정할 수 있다.

- 2 -

구 분	근 무 형 태
청경대장, 청경반장, 본부청경	통상근무제
청경조장, 청경조원	3조2교대제

- ③ 청경의 월 기준근무시간은 174시간으로 하고, 시업·종업시간·휴게시간 및 수면시간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그 이외 근무 및 휴게시간은 「취업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 ④ 3조2교대 청경의 휴일은 다음과 같이 하고 통상근무 청경의 휴일은 서울교통공사 취업규칙의 통상근무자의 휴일을 준용한다.

근 무 형 태	휴 일
교 대 근 무 (3조2교대)	A근무 7일중 1일 B근무 월단위 지정휴일 2당무

- 제10조(복무) 청경복무에 관하여는 영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책임완수) 청경은 지하철 시설의 방호를 위하여 항상 철저히 경비 및 감시 근무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 제12조(근무기강 확립) 청경은 법령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특히 제복근무자로서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13조(휴가) ① 청경의 휴가는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② 청경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규정) 청경의 임용 및 복무에 관하여는 서울교통공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 제 4 장 보 수

- 제15조(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제16조(산정기준) 보수 산정기준은 서울교통공사 보수규정 제4조를 준용한다.
- 제17조(계산기간) 보수의 계산은 서울교통공사 보수규정 제5조를 준용한다.
- 제18조(보수) ① 청경의 봉급은 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0조 규정에 의한 경찰청고시에 따라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으로 지급하고, 기본임금은 별표 4와 같다.

- ② 청경의 보수계산 시 통상임금은 기본임금, 직무수당, 감독자 직책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청경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19조(휴직자의 보수) 휴직중의 청경에 대하여는 서울교통공사의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보수규정상의 "기본임금"은 청원경찰에게는 기본급을 말한다.
- 제20조(결근자 보수) ① 취업규칙에서 규정하는 법정휴가, 연차휴가, 특별휴가, 병가 등 기타의 연간휴가기간을 초과하여 유계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제21조 (직위해제자의 보수) ① 청경직위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 중에는 제수당을 지급중지하며 기본급의 50%만 지급하고 발령당월의 보수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 ② 형사사건으로 계류 중인 사유로 직위 해제된 직원의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 중 미지급보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 제22조(감독자직책수당) 청경의 감독직을 맡은 자에게는 별표 3에 의한 감독자 직책수당을 지급한다.

#### 제 5 장 복리후생 및 장비관리

- 제23조(피복) ① 청경의 피복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피복은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피복지급 규정의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③ 지급된 복장은 근무 시 또는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품위를 손상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피복의 관리 등 기타의 피복에 관한 사항은 피복지급규정을 준용한다.
- 제24조(복리후생) 청경의 복리후생은 서울교통공사의 복리후생규정을 준용한다.
- 제25조(급식보조비) 청경의 급식보조비는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그 계산 및 지급방법은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여비) ① 청경이 공무출장 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교통공사 여비 규정 중 3급 이하에 준한 여비를 지급한다.

② 청경이 경찰학교에 입교할 때는 경찰청장의 교육여비 통보액과 교통비를 지급한다.

제27조(무기휴대) 주요시설에 배치된 청경에 한하여 법 제8조제2항 및 제15조 및 「영」 제16조 규정에 따라 무기(가스총, 전자총격기 포함) 및 실탄(가스탄 포함)을 지급 휴대케 할 수 있다.

제28조(무기의 관리) 무기관리책임자는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무기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9조(변상) 고의 또는 과실로 규정된 연한 내에 복장을 훼손 또는 망실하거나 서울교통공사 소유장비를 손괴 또는 망실한 경우에는 현물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현물배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변상할 수 있다.

제30조(반납) 청경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피복 및 개인장비를 각 시설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피복지급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6 장 교육 및 상벌

제31조(교육) ① 청경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한다.

1. 기본교육: 「영」 제5조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자체교육: 청경이 배치된 각 시설의 장은 매년 초에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월 4시간 이상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적을 교육일지 등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서울교통공사가 부담한다.

제32조(포상) 청경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비상계획담당부서장 및 해당 소속장의 추천에 의하여 포상한다.

1. 열차 안전운행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자
2.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방지한 자
3. 지하철 공간유지에 특히 공헌이 있는 자
4. 기타 국민의 공복으로서 선행을 한 자

- 5 -

제33조(징계) 청경의 징계는 서울교통공사의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의한다.

## 제 7 장 보 칙

제34조(관계법규의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영, 규칙 및 서울교통공사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사의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7.10.26.)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하되, 2017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운 영 표** (제3조관련)

구 분	운영인원					비 고
	계	대 장	반 장	조장	조원	
합 계	43	1	1	11	30	
본사/별관	43	1/0	0/1	4/7	21/9	국가 중요시설 교통 1급

(별표 2)

**사업·종업시간 및 휴게시간** (제9조관련)

근무형태		시 업 시 각		종업 시각	휴게시간 (1군무)	수면시간 (1군무)	실근무시간 (1군무)	비 고
+H110203세 월~금요일	09:00		18:00	1시간 (12:00~13:00)		8시간		
	+H110201근 3조 2교대	A군무	09:00	18:10	1시간 (12:00~13:30)		8시간10분	A군무7일 B군무2주 (9일근무 14일) 근무반복함
B군무		18:00	다음일 09:10	1시간 (19:30~20:30)	2시간50분 (02:00~ 04:30)	11시간 40분		

(별표 3) (개정 17.10.26)

**제수당 지급기준표** (제18조관련)

수 당 별	지급률 및 지급액	비 고
1. 장기근속수당	일반직원의 동일	
2. 연차수당	일반직원의 동일	
3. 상여수당	+장급 상여금 지급율(200%) +상과급 상여금은 일반직원의 동일	
4. 가족수당	일반직원의 동일	
5. 별장수당	취업규칙 또는 근무명령에 따라 기중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하거나 사건근무를 한 청장에게 지급 지급률은 일반직원의 동일	
6. 감독자직책수당	조장 3.5만원, 반장 4.5만원, 대장 8.5만원	
7. 직무수당	월 15,000원	
8. 병호수당	+통상근무자 : 통상임금 × 6.49% + 22만원 +고대근무자 : 통상임금 × 6.22% + 22만원	

(별표 4)

**기본임금표** (제18조관련)

호봉	금액	호봉	금액
1	1,543,800	21	2,852,800
2	1,613,400	22	2,896,500
3	1,686,800	23	2,943,600
4	1,765,000	24	2,983,700
5	1,843,900	25	3,027,400
6	1,924,600	26	3,068,000
7	2,001,500	27	3,103,700
8	2,075,800	28	3,138,600
9	2,147,200	29	3,172,800
10	2,215,600	30	3,205,700
11	2,280,900	31	3,238,800
12	2,345,900	32	3,269,800
13	2,408,000	33	3,299,000
14	2,468,400	34	3,326,300
15	2,531,300	35	3,352,100
16	2,587,400	36	3,376,600
17	2,647,300	37	3,400,100
18	2,698,400	38	3,422,600
19	2,753,900	39	3,444,100
20	2,802,000	40	3,464,600